

구미시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4.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구미시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함으로써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능력개발,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사업을 지원하고 구미시 양성평등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정책기획과,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구미시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미시 양성평등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등)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능력 개발,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미시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미시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취약계층 여성의 복지증진 및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의 지원
3. 여성·가족친화 사업의 지원

4.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거나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

③ 기금은 해당연도 기금의 이자발생 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금 범위에서 운용하여야 한다.

④ 해당연도 결산 잉여금은 전액 재적립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구미시 양성평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장은 여성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여성단체 협의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사람
2. 여성관련 분야 및 양성평등 정책 개발 능력이 있는 사람
3. 여성·가족 분야 및 각계각층 직능 대표
4. 그 밖에 양성평등기금 운용 및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소관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 소관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의 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 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5월 10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서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출납·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구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및 「구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진행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또한, 해당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는 ‘양성평등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임기인 2025. 2. 9.까지 대신한다.

관계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기금의 설치 등) ①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의 출연금
2.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양성평등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4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제5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3. 제40조에 따른 국제협력 관련 사업의 지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지원

제44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42조제4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하여야 하며 그 임명된 사람이 각각 수행하여야 할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이사(理事) 중에서 임명하여야 하는 사람

가. 기금수입담당이사: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

나.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 기금재무관의 직무

2.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직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하는 사람

가. 기금지출직원: 기금지출관의 직무

나. 기금출납직원: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5조(그 밖의 수입금) 법 제42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1.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2.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3.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입금

제26조(양성평등기금의 관리·운용)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관리·운용한다.

1. 양성평등을 위한 사업에 대한 투자 및 용자
2. 금융기관 예치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4. 그 밖에 기금조성을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 및 용자

②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④ 기금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7조(기금의 용도) 법 제43조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사업

2. 다문화가족 등의 가족지원 사업

3.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소 관 부 서		가족정책과
입 안 자	과 장	민 영 미
	팀 장	백 은 영
	담 당 자	박 예 빈 (480-6539)